독서교육 전담 사서직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

김 승 환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목 차

1. 국민 독서운동 전개와 도서관의 역할
2. 독서활동과 독서교육 전담사서의 역할
3.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독서교육 전담 사서직의 문제점
  1)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독서교육 능력
  2)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요건과 독서교육 능력
4. 독서모임의 조직과 독서운동의 활성화
5. 독서교육 전담사서의 전문적인 능력 양성

1. 국민 독서운동 전개와 도서관의 역할

새로운 과학,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식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여 어제의 정보가 오늘은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리는 급변의 세계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을 국제화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정보 취득의 도구가 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에 대한 지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독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운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획되고 또 실시 되어 왔다.

이러한 독서운동이 수 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결과를 알 수가 없다. 본래부터 독서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사회발전의 기반으로 남아 있으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논한다는 것은 성급한 문제가 되겠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점검해 보았을 때 국민들의 독

서생할이 선진문화 국민으로서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독서운동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독서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도서관을 통하여 국민독서생활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독서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국민독서생활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국민들의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운영되는 분관제도나 작은도서관 제도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봉사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러한 독서운동의 방법으로 이동도서관과 대출문고 제도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적극적인 독서운동 방법으로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공포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마련했다.

그러나 도서관은 먼저 국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자극을 줄 수 있는 독서환경을 만들고, 전파매체는 물론 레저생활의 유혹에서 벗어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생활로 유도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독서운동은 도서관에서 국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여 독서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인데, 어느 제도밑에서 계획된 독서생활이 이루어 지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들과 같이 활동하는 적극적인 독서운동을 펼쳐나가는 도서관 중심의 독서운동이 계획되어야 한다.

책을 읽으려는 국민들에게 독서생활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서관은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독서생활이 전개될 수 있는 도서관운영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독서운동은 지금까지 많은 사회단체에서 실시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된 활동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국민독서생활화 운동은 도서관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 국가적인 차원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그동안 도서관이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독서생활화 운동을 많이 전개해 왔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독서생활화에 대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2. 독서활동과 독서교육 전담사서의 역할

문화체육부에서 지난 1993년을 '책의 해'로 제정하고 독서운동을 전개한 결과 출판계를 비롯하여 도서관계에 불어 닥친 독서의 열풍은 대단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도서관 그리고 각종 독서운동 단체가 계속해서 세미나 혹은 독서행사를 가질 때마다 매스컴 역시 관심있게 보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국민들의 독서 문화활동이 가장 활발한 해 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독서생활을 법으로 장려하겠다는 독서진흥법을 발상한 책의해조직위원회는 독서문제의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도서관진흥법을 무시하고 끝까지 독서진흥법의 제정을 주장하여 결국은 현행법이었던 도서관진흥법과 독서진흥법을 합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공포(1994.3.24/법률 : 제4746호)하고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까지 제정하여 현행법으로 시행(1994.7.25/대통령령 : 제14339호)하게 되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국민독서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문제는 독서환경의 조성으로 작은 도서관격인 문고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독서생활에 대한 향상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환경의

조성에 있다고 볼때, 동단위의 행정구역은 물론 소집단의 거주지에까지 문고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에게 독서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좋은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독서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해서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새로 법이 제정 되었어도 독서운동 전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사서직의 양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도서관은 국민들의 독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이 일상적으로 매일 같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나 기능의 기본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도서관의 적극적인 활동이란 사서직원들이 도서관의 기본업무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이용만의 소극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자료센터로 또는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봉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내에 이용자 그룹을 각 계층별 및 지역별로 형성하여 처음에는 독서생활을 중심으로 독서활동을 전개하는 모임을 갖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들 모임은 독서활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으로 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에는 독서교육을 전담할 능력있는 전문 사서가 배정되어 각 도서관의 독서활동에 대한 문제가 그 사서에 의해 총괄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국민들의 독서활동이 최전선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최소의 독서활동의 장소로 문고의 설립과 운영은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독서교육 전담사서의 역할과 활동은 더 필요하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독서생활의 장이 되는 문고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문고 건물 ① 33제곱미터 이상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을 제외한 ② 열람석 6석 이상 ③ 자료 1,000권 이상 : 시행령 별표 1-4)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법 제2조 제2항).

그리고 문고는 그 설립자에 따라 공립문고와 사립문고로 구분(법 제3조 제2항)하는데, 공립문고의 설립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 투자기관 및 관련 단체 중에서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법 제39조 1항)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법 제39조 2항)고 했으며, 시행령에서는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적합한 공립문고를 1개 이상 설립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 1항)라고 했다. 그리고 설립된 공립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 40조 2항)라고 했다.

사립 문고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 거주단지 건축물(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① 종업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장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지 ③ 6층이상 연면적 7,000m²이상의 건축물 : 시행령 제33조 1항)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지방문화원, 복

지회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공중이용시설 : 시행령 제33조 2항)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법 제39조 3항)고 했으며, 사립문고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39조 4항)고 했다. 그리고 사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법 제40조 3항)라고 했다.

이와같이 공립문고나 사립문고는 해당지역의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야 함으로 문고의 운영은 최전선 최소의 독서시설이기 때문에 독서교육 전문 사서에 의해 운영되는 독서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3.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독서교육 전담 사서직의 문제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6 조 1항에서 '도서관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 교육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고 했으며, 또 시행령에서는 법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고는 그 시설 및 자료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 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시행령 제4조 2항)고 했다. 즉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법에서는 사서직원등(사서직원, 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문고에는 사서직원이나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시행령의 각 조문을 조사 분석해 보면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사서직원 등과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 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말한다 : 시행령 제20조 1항)을 사서직원만으로 배치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사서직원외 비 전문직원을 배치할 수도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 운영의 직원으로서 사서직원과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비교해보고 독서교육 전문요원으로서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보고자 한다.

1)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독서교육 능력

사서직원의 자격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제6조에서 '① 도서관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서직원 등의 연수, 기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문고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등을 둘 수 있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4746호)'고 했다.

그리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② 사서직원은 별표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39호)'고 했는데 사서직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시행령 제5조 관련)

1급 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자
2. 2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한다)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자
4. 2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 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부전공 자

비고 :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 제곱미터, 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2)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요건과 독서교육 능력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사회교육법 제17조에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회교육 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는 사회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등 사회교육활동의 기획·분석 및 지도업무를 전담하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회교육법 1990.12.27.개정 법률 제4248호)'고 했다. 그런데 도서관을 동법 제23조에서는 '① 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한다. ② 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도서관은 사회시설로 인정되어 있으며, 사회교육시설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는데,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 전문요원과 2급 전문요원으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89.2.28〉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사회교육학을 전공한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480시간 이상 받은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4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640시간 이상 받은 자
5. 2급 전문요원으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 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160시간 이상 받은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2급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320시간 이상 받은 자
3. 공무원으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에 관한 학점을 15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240시간 이상 받은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89.2.28〉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사회교육법 시행령 1993.3.6. 개정 대통령령 제13869호)'고 했는데, 사회교육학 분야의 학과와 영역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화과학 분야의 학과

사회교육과, 산업교육과, 농업교육과, 공업교육과, 상업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교육공학과, 교육행정과, 국민윤리(교육)학과, 사회학과, 사

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별표 2] 영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학의 영역

1. 공통필수(2과목 필수)—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2. 사회교육학(1과목 이상 필수 선택)—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 사회교육 행정론, 사회교육과특수교육, 사회교육법규,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 평생 교육론, 사회교육기관및시설, 사회교육과여가, 사회교육과정및평가, 사회교육과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사회문제
3. 사회·심리학(1과목 이상 필수 선택)—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 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교육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여성학, 노인학
4. 직업교육학(1과목 이상 필수 선택)—산업교육론, 직업윤리, 산업교육방법론,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인간자원개발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 직업교육방법, 레크레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및평가
5. 사회교육실습(필수과목(학점 : 4주))—교육실습 또는 실무실습

주) 1. 사회교육학의 영역 교과목의 과목당 학점은 2학점이상(또는 32시간 이상)으로 하되, 15학점 이상(또는 240시간 이상)을 취득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7과목 (사회교육실습은 제외)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전문대학은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하면 정사서 및 준사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와같이 사서직원들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사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이 된다.

사서직원은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을 이수 함으로써 독서교육이나 독서지도의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여 자격을 갖추지만, 사회교육 전문요원은 사회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살펴보면 독서의 본질에 대한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독서지도나 독서환경에 대한 독서전문과정을 선택과목인 '도서관학' 한 과목으로 독서교육(독서지도)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사회교육 전문요원이 독서교육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지않고는 독서교육 전문요원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4. 독서모임의 조직과 독서운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독서자료 등의 확보를 위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독서생활화 등의 업무촉진 등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은 협조해야 한다(법 제46조)고 법으로 정했으며, 국가 지방 자치 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주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법 제47조). 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생, 직장의 직원들에게 독서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독서모임을 두

도록 권장하고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법 제49조).

특히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생활 및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독서의 달(1994년 부터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함 : 시행령 제36조 1항)을 설정하고 독서실력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 표창,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48조).

새로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국민들의 독서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독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활동문제를 실제로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독서운동의 활성화를 독서모임의 조직과 운영에 있다고 보고 학교와 직장에 조직하여 운영해야 하는 독서모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독서모임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독서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독서생활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국민 각 개인의 정보획득은 물론 지적향상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민정신과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독서생활을 현대문명생활에 빼앗기고 있다. 그러므로 독서모임이란 조직속에서 의식적으로 독서생활을 할 수 있는 독서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독서운동의 전개는 60년대 70년대 전 국민에게 전개되었던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들의 시민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독서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한 많은 행사를 계속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은 조직이 있어야 성공한다. 독서운동 역시 조직이 있어야 성공한다. 마을이나 직장 단위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의 성공처럼 각 도서관도 독서모임의 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 조직된 독서모임을 중심으로 독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독서모임은 도시나 농촌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정이나 이웃에서 독서운동을 전개하는데 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각 도서관에서는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육성시켜가는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활동의 전개는 이제 독서교육 전담 서서직원에 의해 계획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많은 도서관에서 독서교육에 대한 전담사서가 없는 상태에서 상항에 따라 아무나 일시적으로 맡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서활동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그 도서관의 독서활동을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된다. 또한 독서활동에 대한 전담사서직이 있어서 해결한다고 해도 역시 전담 사서가 독서교육에 대한 능력없이는 독서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없으므로 독서교육에 대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5. 독서교육 전담사서의 전문적인 능력 양성

새로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는 독서교육 전담 사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정해 놓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사서직원등과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 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말한다' : 시행령 제20조 1항)에 대한 연수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법 제16조 10항)"을 위한 사서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해

야 한다(시행령 제20조 1항). 그리고 사서연수과정을 일반연수와 특별연수 과정으로 구분하되 일반연수 과정은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시행령 제20조 2항), 각 도서관 및 문고의 장은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 3항)고 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때는 따로 정한다(시행령 제 20조 5항)고 했다.

연수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에 관련된 직원의 사서연수과정을 일반연수와 특별연수 과정으로 구분해서 연수교육을 받도록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 것은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게 독서교육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담사서직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가 일반연수든 특별연수든 좀더 적극적인 도서관과 문고의 운영을 위한 독서교육 전담 사서직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독서교육 전담사서직의 양성은 사서자격증(준사서 이상)을 획득한 도서관의 현직 사서로 하여금 재교육 실시 방법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독서운동이 새로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전개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도서관과 더 작은 도서관인 문고의 육성과 문고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서관련 전담사서 직원의 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고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민들의 독서활동을 전개하는 독서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있다. 문고가 설치되면 자료의 정리나 관리에 대한 문제는 지도와 지원을 받는 공공도서관에 의해 정리되고 정리된 자료 역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만 소장되기 때문에 문고의 효율적인 운영은 문고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대출해 많은 국민들이 항상 책을 읽고, 읽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독서지도의 능력을 도서관의 모든 직원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 도서관에서는 독서운동을 전개하는데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독서교육 전담사서가 있어야 한다.

연수교육에 의한 독서교육 전담사서의 양성은 그동안 대학에서 문헌정보(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 독서교육(독서지도)에 대한 교과목의 편성을 소홀히 하여 사서로서의 독서교육(독서지도)능력을 배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부딛친 현실에서 독서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조치 방법이다. 그동안 대학의 문헌정보(도서관)학과에서 독서교육(독서지도)능력을 위한 교과과정을 심도 있게 편성하여 꾸준히 실현해 왔다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독서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아닌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독서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므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제정문제에 까지 사태가 전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그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시행령에서 문고의 설치 문제가 법으로 조치되면서 문고운영에 대한 직원 문제가 사서직이 아닌 비전문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서 연수교육에 의한 독서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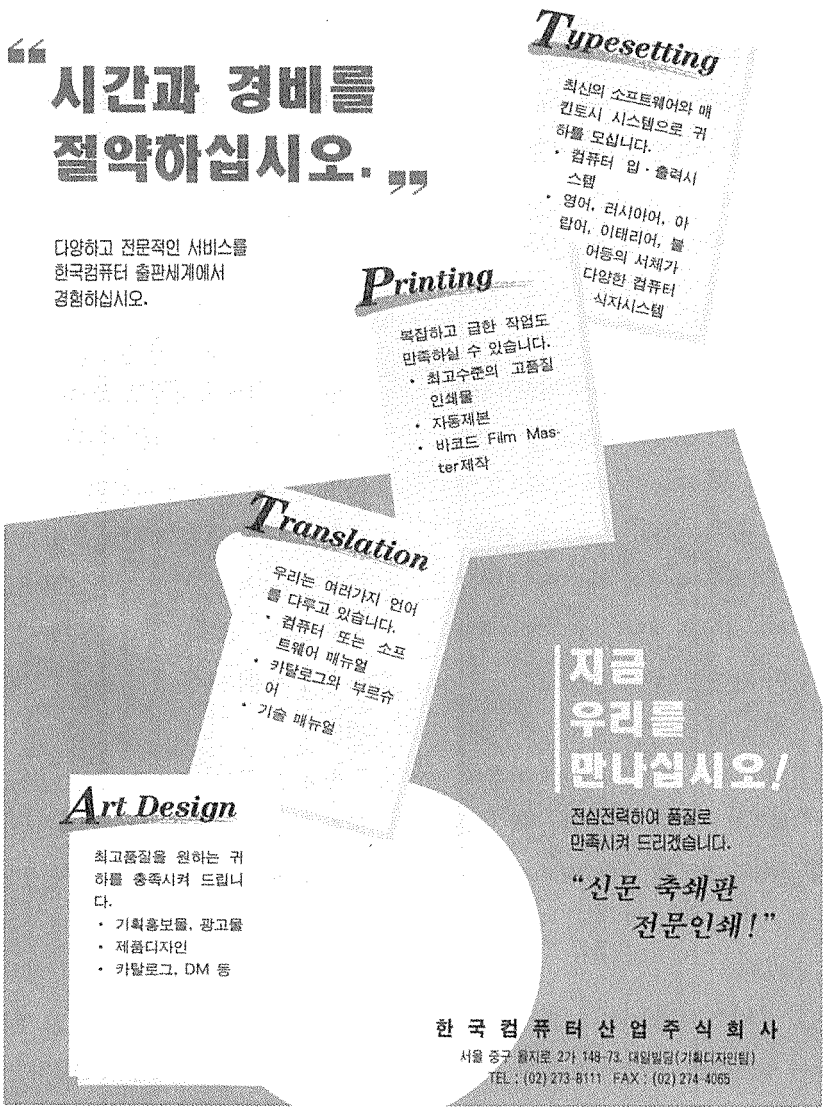
동안 독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독서교육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시행령에서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에 관련된 직원에게 사서연수과정을 설치해 일반연수와 특별연수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해야 한다고 한 법적 근거를 살려 독서교육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방법이 현실에 부딛친 독서운동을 도서관에서 전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독서교육 전담사서를 양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영구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는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독서교육(독서지도)의 능력을 길러 어느 도서관의 현장에서도 독서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서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는데 있다.